

부산대학교 학부대학 선거시행세칙

제정 2025. 10.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및 각 학부, 예하 세부 전공의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직접, 보통, 자유,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본 세칙의 해석 및 적용은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본 세칙 각 조항들의 문맥적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기본적으로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각 학부, 예하 세부 전공 학생회장단 선거에 경우 각 단위별 회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각 학부, 예하 세부 전공 단위의 내부 세칙이 부실 혹은 전무한 경우 해당 단위의 후보자 및 단위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을 준용해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학부대학 학생회칙 제10장 47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지는 모든 이는 선거권을 가진다.

② 휴학 중인 회원 중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여 선거권을 회복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6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본 회의 학생회칙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되는 자
2. 학부대학 대의원 및 각급 학생회의 선출직, 인준직이 아닌 자
3. 출마 후보가 공고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 제1항제2호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획득하려는 자는 추천 서명 행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퇴서 1부를 작성하여 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공고 게재 위치 및 시간은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톨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톨미팅에 참석한 출

마 예정자는 틀미팅 시작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퇴서 1부를 작성하여 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 공고해야한다. 이 때 공고 게재 위치 및 시간은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 및 학생과에 의뢰하여 학적을 확인한 후 확정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 ① 회원은 누구나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자신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오기, 누락 등 기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선거인 명부 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선거인명부의 오기나 누락 등 기타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첫날로부터 3일 전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항에 해당될 지라도 선거일부터는 수정할 수 없다.

제3장 선거 관련 기구

제1절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목적 및 성격) 학부대학은 학부대학 학생회의 원활한 선거 시행 및 선거사무 처리를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0조(권한 및 직무)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학부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으며 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반 업무에 관한 집행권
2.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이의 제기 심의 및 의결권

②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를 가진다.

1.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집행
2.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공정한 감시
3. 본 선거시행세칙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선거운동규칙을 위반한 개인 및 선거운동 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및 경과 보고
4. 선거자금에 대한 감사 및 결산 공개
5.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6. 그 밖에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11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이 맡게 되며, 권위 시 부학생회장이 맡게 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은 학부, 예하 세부 전공 회장 중 4인으로 구성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임원 명단을 포함하여 이 사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 공고해야한다.

제12조(입기)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음이 공고된 시점부터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이 때 선거 관련 제반 업무의 종료 시점은 그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호선과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선된 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위원의 단위의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당 단위 부학생회장 역시 그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다른 단위의 회장 중에서 새로 호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만 해당한다.

1. 위원의 사망
2. 위원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교내에 부재한 경우
4. 직계 가족의 사망 및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황

② 선거관리위원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됨이 분명하게 입증된 경우 해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선거에 대한 반민주주의적 태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그 밖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부대학 학생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경우
3. 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경우
4.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해임의 당사자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인정된 사항인 경우

③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음의 각 내용이 모두 충족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제출 및 심의가 가능하다.

1. 해임 요구 발의자가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인 경우
2. 해임 요구에 대한 합당한 내용 및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해임 요구 발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유형과 형식에 구분하지 않으며 증빙 자료로서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거나 이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즉시 해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권한 박탈 및 직무 수행 중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임 요구안이 접수되고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때 해임 요구 발의의 대상자는 필수로 참석한다.

⑤ 해임 요구 발의의 대상이 선거관리위원장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즉시 해당 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시키고 직무 수행을 중지시켜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해임 요구 발의의 대상자는 필수로 참석한다.

⑥ 해임 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과반 참석과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재적 총 수에서도 제한한다.

⑦ 해임 요구안 의결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의결되고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해당 위원 본래의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 수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회의 소집)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이 가능하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
2. 선거관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 요구

제15조(의결) 특별히 회칙 및 본 세칙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과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진행한다.

제16조(출석 요구)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거나 혹은 연관이 있는 자

제17조(재정)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회의 재정의 일부로 포함하여 진행하며 결산안과 증빙 자료를 본 회의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18조(목적 및 성격) 선거운동본부는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학부대학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활동을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제19조(구성 및 자격 요건) ① 후보자등록을 마친 회원은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③ 정후보와 부후보의 자격 요건은 본 세칙의 제6조 [피선거권]에 따른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완료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본 회의 회원인 자
 - 2.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완료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학생회칙 및 학부대학 학생회칙의 징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완료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학부대학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의 선출직, 인준직이 아닌 자
 - 4. 후보 등록일까지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게시한 자
- ⑤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등록일 까지 다음 호의 각 요건에 맞추어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아야 선거운동본부로서 정식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 정식 승인이 되지 않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 1. 선거운동본부 명칭과 그 의미
 - 2.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소속, 학번, 이름, 연락처
 - 3.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사진. 이 때 사진은 가로x세로 3cmx4cm를 기준으로 하며 이목구비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 4. 선거운동본부의 조직도 및 예상 담당 업무 배분표
 - 5.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전원의 재학증명서. 단, 휴학생의 경우, 본 회 학생회칙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이 자격 및 권리가 보장되어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학생회비납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본부의 지시 하에 진행한 선거 관련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 ⑦ 본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본부와 교류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위였음이 입증된 경우,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인원의 선거 관련 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
- ⑧ 본 조 제7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의 추가적인 선거 관련 행위가 적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⑨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활동이 불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명 요청을 해야 한다.
- ⑩ 등록일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 추가 및 인원 교체는 금한다.

제20조(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함과 동시에 공식적 석상에서 후보를 대변 및 보좌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의 임명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의 임의로 진행하며, 선거운동본부

등록일 이후로는 임의적 교체를 금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황 파악을 하고 이를 본 회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사망
2.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교내에 부재한 경우
4. 직계 가족의 사망 및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황
5. 본 회 회원 자격의 상실
6. 선거관리위원 2/3이상이 동의하는 기타 사항

제21조(선거운동원) ① 본 회의 회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 비례대표인 대의원
 - 나. 단과대학, 독립학부의 학생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집행부원)
 - 다. 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집행부원)
 - 라. 학과(부)전공 학생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집행부원)
 - 마.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중앙동아리 분과장, 집행위원(집행부원)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운동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회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되어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는 당연히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본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소속 선거운동원의 명단과 증명사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운동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의 추가, 삭제 그 밖의 변경이 있으면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복 또는 선거운동원임을 증명하는 표식은 선거운동원만이 이를 착용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선거운동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학부대학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권고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4.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5.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3조(직무) 선거운동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운동. 유세, 홍보 등
2. 정책 개발
3. 후보자 보좌
4. 투표 및 개표에 참관인 파견

제24조(선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오직 학내에만 두어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물미팅 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선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과 휴게실 등 이용 시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간
2. 총학생회 및 타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와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 공간

③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가 희망하는 공간이 동일한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절충점을 찾되 양 측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사무실 출입을 금한다.

제25조(선거 관련 사무) 본 회가 소유한 사무기기(PC, 프린터,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요청 후 사용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며 사용 유형 및 사용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제4장 선거의 진행

제26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따른다.

제27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첫날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선거기간과 선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롤미팅) ① 롤미팅은 본 세칙 및 선거운동규칙에 대해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하는 회의 체로 선거관리위원장에 더하여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본부장 중 1인이 필수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롤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세칙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의 사퇴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가 롤미팅에서 변화 혹은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3. 선거운동본부의 의무 및 구성, 자격 요건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세칙이 명시하는 원칙과 그 원칙이 위배되었을 때 부여되는 징계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④ 선거운동본부가 롤미팅에서 변화 혹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유형, 매체, 시간, 방식, 수량 등
2. 선거 사무실에 대한 요청
3. 선거 사무 용품에 대한 요청
4. 기타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수적 사항
5. 선거운동규칙

⑤ 롤미팅에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협의가 끝나고 48시간 이내에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석자 역시 이를 각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

⑥ 롤미팅에서 협의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선거 종료 시점에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후보자

제29조(입후보 등록) ① 학부대학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자 신청서 : 정후보, 부후보 각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 추천 서명 : 본 회의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추천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명을 받을 수 있다.
3. 재학증명서 : 정후보, 부후보 각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정선거 서약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선거운동본부 등록 서류 : 본 세칙 19조 4항의 각 호에 의거하여 각 1부

6. 출마의 변

③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그 양식을 지정하여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며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제30조(추천 서명) ① 학부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 회의 구성원의 10분의 1이상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② 회장후보 및 부회장후보 어느 일방에 대한 회원의 추천서명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③ 추천 서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기한에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입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본부 등록을 할 수 없다.

1. 추천 서명 행위는 반드시 학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추천 서명 행위는 반드시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를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추천 서명 행위시 개인의 공약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방향성까지만 설명할 수 있다.

4. 추천 서명 서류의 양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만 해야 한다.

5. 서면으로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지 못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④ 추천서명을 하거나 받는 활동은 타인이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서명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명

2.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추천서명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받은 추천서명

4.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추천서명

제31조(입후보 승인 및 공고) 등록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후 공고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 이후 선거운동본부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 등록증을 교부한다.

1. 정후보, 부후보의 소속, 학번, 이름

2. 추천인 수

3.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 사무실 위치

4. 출마의 변

5. 공정선거서약서

제32조(등록 무효) ① 등록 공고 이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를 밝히고 등록 무효 공고를 하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각될 경우
2. 본 세칙 제29조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을 마치지 못한 때
3. 본 세칙 제30조 제5항에 따라 무효로 한 추천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서명의 합이 본 세칙 제29조 제2항에 충족하지 못한 때
4.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어 소속 선거운동본부가 해산된 때

② 등록 무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무효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해 24시간 내에 결정을 통보한다. (단, 등록무효 결정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33조(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해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이행되며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제6장 선거 운동

제34조(정의) 이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뜻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통상적인 준비행위
3. 후보자의 정책·정견 등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3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종료된 날의 이튿날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이 때 선거 운동 지정일은 톨미팅 협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 운동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정도가 협의의 대상이다.

제36조(사전 선거 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선거 기간 및 시간 이전의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며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이 적발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로써 조치한다.

1. 온·오프라인 상의 선전물을 통한 선거 운동
2. 언론 매체,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3. 정책 공청회, 선거 독려 이벤트 등의 행위
4. 선거 출마 사실에 대한 발설 및 단순 의견개진이 아닌 구두상의 홍보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다.

1. 입후보 추천 서명
2.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3.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단 시행 방법 및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설문 조사의 양식 및 내용 상 선거 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선거 운동으로 간주함.

제37조(선거 운동의 종류) 선거 운동의 종류는 다음 각 항이 있으며, 룰미팅에서 각 선거운동본부 간의 협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형태를 추가할 수 있다.

1. 유세 활동
2. 선전물의 게시 및 배포
3. 정책 공청회·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4. 지정된 사이버 공간 상의 선거 유세
5.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제38조(유세 활동) ① 유세 활동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들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 운동으로 과방·강의실 방문, 선거 관련 게시물 배포, 야외 마이크 유세 등을 의미한다. 단 과건물 내 유세의 경우, 사전에 해당 과 사무실과 의견 조율 후 실시하며, 야외 마이크 유세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를 룰미팅을 통해 제한하며, 활동 시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조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유세 활동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선거권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선전물) ① 선전물은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게시물 : 부착 및 게시가 가능한 선전물로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동영상 등이 있다.
2. 유인물 : 유인물을 선거권자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명함, 정책 자료집, 선거 리플렛 등이 있다.
3. 특수선전물품 : 특수선전물품이란 인쇄 매체, 영상 매체를 제외한 모든 선전물로 선거운동본부복, 깃발 등이 있다.

② 선거 운동 기간에 게시 및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은 룰미팅에서 정한 선거운동규칙의 수량과 규격, 게시 위치 등을 따른다. 해당 내용은 각 호에서 자세히 규정하며 온라인 게시물은 별도로 룰 미팅에서 논의한다.

1. 선전물의 전체 수량
2. 선전물의 색상 제한
3. 선전물의 규격

4. 선전물의 총 지출 예산 제한
5. 게시 위치
6. 온라인 선전물의 게시 시한
7. 온라인 선전물의 유형
8. 온라인 선전물의 내용
9. 선거운동본부 등의 특수선전물품에 대한 것
10. 그 밖의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전물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

③ 선거 운동 기간에 게시 및 배포되는 모든 선전물을 게시 및 배포하기 최소 3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도장을 모두 받아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는 게시물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조치하며 게시물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단, 승인도장을 받기 힘들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 그 견본 혹은 시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40조(게시물 및 유세물) ① 게시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온·오프라인 상의 포스터
2. 오프라인 상의 현수막
3. 온라인 상의 동영상
4. 각 선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SNS의 게시물

② 유인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온·오프라인 상의 정책 자료집
2. 온·오프라인 상의 선거 리플렛
3. 선관위에서 허가를 받은 기타 유인물

제41조(특수선전물품) 특수선전물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선거운동본부복
2. 선거운동본부 깃발
3. 선거운동본부 팻말
4. 기타 각 선거운동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42조(선거 비용 제한 및 감사의 원칙) ①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형성하고, 과도한 경쟁과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조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② 선거 비용의 총액은 톨미팅에서 협의하되,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 비용 총 지출은 총합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단, 선거비용은 선전물 제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③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 ④ 개표 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과 관련된 자료(결산안, 영수증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결산안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결산안에는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총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기간에 선거운동본부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무불이행이 당선무효의 사유가 됨을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이행을 마쳐야 한다.
- ⑥ 모든 선거운동본부는 향후 선거 비용의 부적절한 사용 혹은 조작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 및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3조(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각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 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및 민주성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6. 선전 방해 및 게시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절차 방해
8.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집행 및 요청 방해
9. 허위 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10.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 운동 참여
11. 사전 선거 운동
12. 선거운동기간의 종료 이후 시행되는 선거 운동
13. 선거운동기간 종료 이후 잔존한 모든 현수막 및 포스터
14.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
15.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인정하는 부정선거운동

②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관련성과 명백함이 드러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활동 및 권한 행사를 일체 중지시켜야 한다.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44조(선거방법) ① 선거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에 부재중인 선거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

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투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선거투표의 방법을 종이 투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5조(투표시간) ① 선거투표는 투표일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본인확인) ① 선거권자의 본인인증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거권자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학번, 비밀번호 그 밖의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③ 제45조 제3항에 따라 종이투표로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제47조(부정투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고, 투표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1.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표
2.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침입하여 조작된 투표
3. 폭행·협박 등의 폭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공개되어 이루어진 투표
4.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투표

제48조(개표) 개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방식에 따른다.

제8장 당선인

제49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단수일 때에는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찬성 득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일 경우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마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당선인이 없으면 당선인이 없음을 공고한다.

③ 당선인의 공고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9조」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

제50조(당선의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당선·선거를 무효로 할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면 당선의 확정을 공고한다.

제51조(당선무효) ①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회칙과 세칙에 따라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로 보거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② 당선인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 ③ 당선인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 때
 2. 개표 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비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 제4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비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5. 선거가 무효로 된 때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당선무효를 공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후보자에게 곧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당선무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을 재심의하여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 ⑥ 같은 선거운동본부에 속한 회장당선인과 부회장당선인 가운데 어느 일방이 규정을 위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다른 일방의 당선 또한 무효로 한다.

제9장 선거에 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제52조(이의신청의 방법) 회원은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신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3조(신청기간) ① 이의신청기간은 개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신청이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의 이유로 할 수 있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때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사실의 오인이 있는 때
4.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신청의 제한) 이미 재심을 거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결정

제56조(기각·각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회원자격이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2. 이미 재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3.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57조(결정의 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위반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에 있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3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2.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위반이 후보자의 등록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외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에 있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52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2. 제5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위반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에 있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 가.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부정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2% 이상인 경우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위반이 선거의 성립 또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란 규정의 위반과 선거의 결과 사이를 연결하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처분에 대한 적부(適否)를 심사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그 처분이 해당 학생회의 규정 또는 본 회 선거시행세칙에 위반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안을 다시 심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사건의 병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건에 대한 수 개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병합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결정문의 통지와 공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결정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사건(약칭 “선본제재”)
2. 등록무효를 확인하는 사건(약칭 “등록무효확인”)
3. 당선무효를 확인하는 사건(약칭 “당선무효확인”)
4.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사건(약칭 “선거무효확인”)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약칭 “적부심사”)
6. 전5호를 제외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건(약칭 “선거이의”)

② 제1항의 서면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결정문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종류
2.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다만,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제재 사건이면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주문
4. 이유
5. 결정한 날짜

③ 제1항의 서면에는 결정에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그 이의신청의 내용과 [별지 제8호] 서식의 결정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결정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 규정의 위반과 제재

제1절 금지행위

제60조(반사회질서의 행위) ① 누구든 선거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한규정위반)** 선거에 관한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매수)** 선거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이해유도)**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품수수)** 상대방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상대방부터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5. **(금품공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6. **(당선무효유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 등을 도발하거나 유도·매수·회유·폭행·협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선거자유방해)** 속임수나 짓궂은 장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후보·투표·개표·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8. **(선전시설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부착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
9. **(투표비밀침해)** 속임수나 짓궂은 장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표 전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행위
10. **(사위등재)** 속임수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거나 오르게 하거나 투표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1. **(사위투표)** 타인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2. **(허위사실공포)** 짓궂은 장난을 목적으로 혹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3. **(후보자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를 돕는 선거운동원을 비방하는 행위
14. **(제한범위 밖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나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15. **(선거문서의 위조, 행사)** 짓궂은 장난이나 행사할 목적으로 입후보신청서, 입후보등록증, 공정선거서약서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선거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16. **(인장의 위조, 부정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직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7. **(자격사칭)**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18. **(허위신고)** 선거에 관하여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9. **(위증)** 선거와 관계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채택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20. **(증거인멸)** 선거와 관계된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21. **(교사·선동)**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행위를 교사(教唆)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제61조(면책·정당화 사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재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제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폭행·협박 등의 폭력이나 속임수로 인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결정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자기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세칙 또는 「선거운동규칙」에서 정한 면책·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 ①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규정의 위반이 있거나 부정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하여 규정의 위반이 있거나 부정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조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규정의 위반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규정의 위반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에 관한 제재

제64조(제재) ① 징계란 이 세칙에서 명시하는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횡수에 따라 분류되며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경고 3회 : 선거 운동 중지. 중지 기한은 3일로 하며 남은 선거 운동 기간이 6일 이하인 경우 최소 중지 기한을 2일로 한다. 총 중지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고 4회 : 선거 부적격 심사.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관련 활동은 중지되며, 선거운동본부의 강제 해산 및 입후보 등록 취소, 당선 무효 등을 심의한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입회하에 진행한다.
 3. 경고 5회 이상 : 선거운동본부의 강제 해산 및 입후보 등록 취소. 당선 이후의 경우 당선 무효로 하며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고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가 이미 경고를 받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경고를 받을 때마다 본 세칙에 명시된 해당 항목의 경고 수에 1번을 가산하여 경고를 부여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부과하면 곧바로 결정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다음 사실을 온·오프라인에 공개적으로 공고한다.
 1. 제재를 받은 선거운동본부
 2. 제재의 정도
 3. 위반한 규정
 - ⑤ 징계에 관한 이의 제기는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명의로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구두로 그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⑥ 징계에 관한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 24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다시 가능하나, 동일 사안에 대해 1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2025년도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3조 2026학년도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제1대 학부대학 학생회장단이 입후보하지 않거나 당선되지 않는 경우, 2025학년도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부대학 재학생 중 비상대책위원장 1인을 추천한다.

제4조 학부대학 첨단융합학부의 경우 첨단융합학부 회장단이 아닌 예하 세부 전공 회장단만을 선출한다.



사임통지서

성 명 _____

학과(부) _____

학 번 _____

위 본인은 _____의 직을 아래와 같이
사임하고자 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책명을 정확하게 기재

e.g. ○○대학 학생회 회장, ○○대학 학생회 △△국 국장/국원 등

- 사 유 : 피선거권 회복 및 선거운동
- 기타(개인신상 등)

※ 사유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

○ 사임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위 본인 _____(서명 또는 날인)

※ 위 밑줄에 정자로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

부산대학교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등록신청서

회장후보 신청인			
성명		학번	
소속	대학		학과(부)

부회장후보 신청인			
성명		학번	
소속	대학		학과(부)

위 사람은 학부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후보등록을 신청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장후보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부회장후보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부산대학교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공정선거서약서

회장후보 신청인									
성명		학번							
소속	대학								학과(부)

부회장후보 신청인									
성명		학번							
소속	대학								학과(부)

나는 선거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재 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회장후보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부회장후보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부산대학교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운동본부 등록 서류

1. 선거운동본부의 명칭과 그 의미

-

2.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선거운동본부이름	회장후보자		기호 번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연락처

3. 선거운동본부의 조직도 및 예상 업무 배분표

- 별도 첨부

4.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전원의 재학증명서

- 별도 첨부

제출일 : 년 월 일

부산대학교 학부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등록증

회장 후보	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 년	학년											

부회장 후보	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 년	학년											

학부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위 사람이 후보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를 신청하였기에 후보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위 사람은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보며,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교부일자 : 년 월 일

부 산 대 학 교 학 부 대 학 학 생 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위 기관명 옆에 직인

[별지 제7호] 선거운동원 확인증

<p>(사 진) 35mm * 45mm</p>	<p>(사 진) 35mm * 45mm</p>
<p>(사 진) 35mm * 45mm</p>	<p>(사 진) 35mm * 45mm</p>

※ '주문' 작성 예시

- 주문에는 결론 부분을 명료하게 기재한다.
- 주문이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면 구분해서 기재한다(아래 참조).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는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본제재 사건의 경우>

- 제재를 부과하기로 하면 “선거운동본부 <OOO>에 경고 1회를 부과한다.” 라고 기재한다.
-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선거운동본부 <OOO>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 라고 기재한다.
- 제재를 면제하기로 하면 “선거운동본부 <OOO>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라고 기재한다.
- 이의신청 후 재심의를 거쳐 제재를 취소하기로 하면 “2021. 11. 15. 선거운동본부 <OOO>에 대한 제재(사건 번호 2021-1)를 취소한다.” 라고 기재한다.
- 이의신청 후 재심의를 거쳐 제재를 유지하기로 하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라고 기재한다.

<등록무효확인/당선무효확인 사건의 경우>

- 당선/등록을 무효로 하면 “선거운동본부 <OOO>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라고 기재한다.
- 당선/등록을 유지하기로 하면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선거운동본부 <OOO>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후보자등록은 계속 유지된다.” 라고 기재한다. 다만, 이의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 인지·조사로 결정하면 2.만 기재한다.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경우>

- 선거를 무효로 하면 “제OO대 OO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무효로 한다.” 라고 기재한다.
- 선거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면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제OO대 OO학생회 회장단 선거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한다. 다만, 이의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 인지·조사로 결정하면 2.만 기재한다.

<적부심사 사건의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로 하면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기재한다. e.g. “1. OO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기간을 2021. 11. 5.부터 11. 7.까지로 한다고 공고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 2. OO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안을 다시 심의하여 판단하라.”
-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라고 기재하고, 그 하자가 경미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로 하면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한다.

<선거이의 사건의 경우>

-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선거이의 사건의 경우에는 규정의 위반이 있으면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는/은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규정의 위반이 없으면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는/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한다.
- 만약 규정의 위반이 당선/등록/선거를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당선/등록/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기재한다. e.g. “1. ~는/은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선거운동본부 <OOO>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or 제OO대 OO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무효로 한다.”